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개정령

(건설부령 제544호, 1993년 12월 3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관리) 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자의 현황에 관한 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당해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사본
2.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교육이수현황

②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 및 취업현황 등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로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신규고용
2. 건설기술자의 퇴직 또는 해임
3. 건설기술자의 현장이동
4.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제3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1주이상, 기사1급 및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2주이상으로 한다.

제4조(건설기술자 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건설기술자관련단체(이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건설기술자교육관련단체(이하 “건설기술교육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이하 “경력사항”이라 한다)의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협회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③ 건설기술교육원은 매년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교육과목 및 교육기간
2. 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사용계획과 강사현황
3. 교육대상 및 교육비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④ 건설기술교육원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교육원은 분기별 교육훈련실적을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설기술심 의

제5조(심의평가단의 구성등)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이 되고, 단원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자가 된다.

② 심의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공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3. 중앙위원회 등의 요청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③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 평가(이하 “심의평가”라 한다)의 평가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평가요령서에 의한다.

④ 심의평가는 당해공사의 시공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의 준공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제6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상망의 연결
-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목표 및 연구내용
2. 연구추진계획
3. 연구수행부서 및 관련기관
4.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5. 기타 정부의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협약체결 대상기관등) 영 제29조의2제1항 제7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협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

택사업공제조항

제9조(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0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공사 분야에서 최근 2년간 5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200억원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기술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내용 및 범위(신기술의 세부내용, 도면등을 포함할 것)
2. 개발비용 및 기간 산출근거
3. 활용현황 및 활용계획
4.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전망
5.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6. 신기술의 실용화가능 입증자료
7.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시험결과 등의 자료
8. 기타 신기술에 관련되는 자료

③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검토 기간 및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건설기술의 검토기관) 영 제33조제4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영 제29조의2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13조(용역업자의 선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비가 3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건설기술용역사업(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인 내지 6인
 2. 5억원이상(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인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인 경우에는 2인 또는 3인
- ②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할 사항 및 평가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설계등의 심의제외공사) 영 제39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
3. 도로건설공사. 다만, 터널이나 길이 200미터이상인 교량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축조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4. 상하수도시설공사.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2만톤이상 또는 정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상하수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5. 20층미만으로서 2천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임해공단의 단지조성공사
7.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공종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가. 포장도로의 덧씌우기공사
 - 나. 준설공사
 - 다. 사방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 라. 단순굴토공사 또는 정지공사

제 5 장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제15조(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가 품질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제16조(품질시험의 실시) ①법 제24조제2항, 법 제24조의2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시험 대장에 품질시험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시험기준등) 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시험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별표2의 기준외에 따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발주자는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표4의 검사시험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시험성과관리등) 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당해기관의 시험비용의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제20조(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 ①영 제47조제1항각호의 건설공사를 허가등을 하였거나 발주한 행정기관(이하 “건설공사허가관서”라 한다)의 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품질시험의 적정성을 확인한 때에는 3월이내에 별표6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한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 까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연도에 건설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요청할 건설공사의 개요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 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품 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후 1월이내 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시험적정성확 인의뢰서에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적정 성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확인을 요청한 건설공사허가관서가 이를 부담한다.

⑥ 제4항의 요청을 받아 건설부장관이 품 질시험 적정성확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결과를 별표6의 품질시험적정성확 인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확인 을 요청한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영 제4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원
2.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 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건설안 전점검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2조(시정조치결과보고)건설공사허가관 서의 장은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생산자등의 품질시험대상 건설자재) 영 제47조의3제4호에서 “철강재로서 건설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1. 수입철근
2. 수입 에이치(H)형강

제24조(건설자재의 품질시험종류 및 방법) 영 제4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 험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7과 같다.

제25조(건설자재의 표준납품서)영 제47조의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의 표준납 품서는 당해건설자재의 종류에 따라 별 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되 납품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품질시험의 실시의뢰등)①발주자 또 는 건설업자 등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에게 건설공 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시험의뢰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 해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 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시험대 행의뢰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대 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에 소 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 고, 시험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 한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품질시험대행실적 제출)영 제4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등)①영 제4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 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지정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및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 보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 본, 임차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등 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험장비현황(시험장비의 명칭·종 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사본. 다만, 건설기술자가 영 별 표2 비고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건설부장관은 품질시험대행자 지정 신청인이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시험실시대행자지정대 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 시험대행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 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가 지 정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 21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 교부받을 수 있다.

제 6 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제29조(단순공종 반복공사)영 제50조제2항 제5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

인 건설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 사”라 함은 제14조제7호의 공사를 말 한다.

제30조(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①영 제50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감리용역 발주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감리용역계약서안(국문)
3. 별지 제23호서식의 감리용역에 종사할 감리원의 명단

③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세부사업계획
3. 외국감리용역업무계획
4. 외국감리용역도입의 목적 및 동기
5. 도입기술에 관한 주요내용·공법 등
6. 도입기술의 국내보유현황
7. 감리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
8. 계약기간 및 그 산출근거
9. 당해 용역도입에 따른 기술습득·개발 이나 연관기술개발 등
10. 당해 외국감리용역업자의 선정경위· 사유 및 선정방법
11. 기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학력·경력자의 교육훈련등)①영 제 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중 학 력·경력자는 매 5년마다 건설기술교육 원에서 시행하는 감리에 관한 교육훈련 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력·경력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학력·경력자에 대한 감리교 육훈련의 기간은 2주이상으로 한다. 다 만,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미만인 학력· 경력자는 감리교육훈련기간을 3주이상으 로 한다.

③ 학력·경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감 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④ 학력·경력자의 감리교육훈련의 대 행,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감리원의 배치방법)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 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 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 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영 제52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 기준 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

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감리원의 경력확인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감리원의 업무등) ① 영 제52조제1항 제1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2. 비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 가.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다. 행정지원업무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분기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 공사 추진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7.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9.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0. 발주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11.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영 제54조제2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설관련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감리전문회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2. 대표자에 대한 영 제54조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술자 및 학력경력자현황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 다만, 학력경력자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경력증명서와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4. 당해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6.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감리원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증)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감리전문회사가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휴업·폐업)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 등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의 감리원을 충원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등록증의 게시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에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 임·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원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41조(부실감리원에 대한 조치)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의 인적사항 및 부실감리내용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사항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력사항확인서에 제1항의 부실감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공사기준을 유상 보급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보급기관·단체를 2이상의 기관·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 7 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제43조(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세부적 업무내용은 별표9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4조(준공표지판의 설치) ① 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 건설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에는 공사명·공사기간·시공회사와 현장대리인·감리전문회사, 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 공사발주기관 및 설계자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제 8 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등

제45조(시공평가)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②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준공된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시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고, 시공중 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④ 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공평가총괄표와 공사건별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하자발생보고)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시공능력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업자 별로 제45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서 평가 한다.

1.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

하자 발생률	감점점수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인 때	0.5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때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 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
4. 최근 3년간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서 국산기자재 사용실적

이 외산기자재 사용실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하고, 2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감산할 것

5. 최근 3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하거나 감산할 것

②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59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우수건설업자의 지정) ①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전체대상 건설업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
 2. 최근 5년간 시행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의 90퍼센트 이상이 80점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②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법령의 폐지) 건설부령 제454호 건설공사업품질시험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④(학력·경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 전에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 2년이

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분야에 관한 안전점검업무 기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안전점검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건설기술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1. 사업비가 3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사업(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 방법																										
1. 참여 기술자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50	○절대평가(자격증, 해당분야경력) 상대평가(해당분야용역참여실적)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배점</th> <th>사</th> <th>업</th> <th>분야</th> <th>분야</th> </tr> <tr> <th>계</th> <th>50</th> <th>20</th> <th>20</th> <th>10</th> </tr> <tr> <td>자격증</td> <td>1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경력</td> <td>1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해당실적</td> <td>20</td> <td>10</td> <td>10</td> <td>-</td> </tr> </table>	구분	배점	사	업	분야	분야	계	50	20	20	10	자격증	15	5	5	5	경력	15	5	5	5	해당실적	20	10	10	-
		구분		배점	사	업	분야	분야																					
		계		50	20	20	10																						
		자격증		15	5	5	5																						
경력	15	5	5	5																									
해당실적	20	10	10	-																									
10	○상대평가 -최근3년간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10	○절대평가 -최근 3년간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없으면(5점), 6개월미만(2점), 6개월이상(0점)																												
5	○상대평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상대평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10	○상대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나머지 과업참여 기간 및 건수																										
5. 업무량 과여유		10	○상대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나머지 과업참여 기간 및 건수																										
		10	○상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100%), 3-5년이내(70%), 5-10년이내(50%)																										
6. 전차용역과관련	-전차용역사업책임기술자	10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100%), 3-5년이내(70%), 5-10년이내(50%)																										
		4																											

2. 사업비가 5억원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 방법																										
1. 참여 기술자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50	○절대평가(자격증, 해당분야경력) 상대평가(해당분야용역참여실적)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배점</th> <th>사</th> <th>업</th> <th>분야</th> <th>분야</th> </tr> <tr> <th>계</th> <th>50</th> <th>20</th> <th>20</th> <th>10</th> </tr> <tr> <td>자격증</td> <td>1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경력</td> <td>15</td> <td>5</td> <td>5</td> <td>5</td> </tr> <tr> <td>해당실적</td> <td>20</td> <td>10</td> <td>10</td> <td>-</td> </tr> </table>	구분	배점	사	업	분야	분야	계	50	20	20	10	자격증	15	5	5	5	경력	15	5	5	5	해당실적	20	10	10	-
		구분		배점	사	업	분야	분야																					
		계		50	20	20	10																						
		자격증		15	5	5	5																						
경력	15	5	5	5																									
해당실적	20	10	10	-																									
10	○상대평가 -최근3년간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10	○절대평가 -최근 3년간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없으면(5점), 6개월미만(2점), 6개월이상(0점)																												
5	○상대평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상대평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10	○상대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나머지 과업참여 기간 및 건수																										
6. 전차용역과관련	-전차용역사업책임기술자	10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100%), 3-5년이내(70%), 5-10년이내(50%)																										
		4																											
7. 작업계획 및 체계		50	○절대평가 -현장상주감리원과 본사직원 기술자로 구분 평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되 당해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0																											
		20																											
		10																											

3. 사업비가 3억원이상인 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 방법
1. 참여 기술자	-자격증	60	○절대평가(자격증, 해당분야경력), 상대평가(해당분야용역참여실적) -현장상주감리원과 본사직원 기술자로 구분 평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되 당해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0	
		20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 방법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20)	
2.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10	○상대평가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3. 신용도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10	○절대평가 -최근 3년간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없으면(5점), 6개월미만(2점), 6개월이상(0점)
		5	
4. 업무량과여유		5	○상대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나머지 과업참여 기간 및 건수
		15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100%), 3-5년이내(70%), 5-10년이내(50%)

4. 제호 내지 제호의 평가는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 가. 상대평가시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정한다.
- 나.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적경력을 평가한다.
- 라.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실적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 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마.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은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대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바. 우수용역업자에 대하여는 3 내지 5 점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사. 부실용역업자에 대하여는 3 내지 5 점의 범위내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아. 참여기술자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의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의 장은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을 용역의 종류별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2] 품질시험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토목

가. 선정시험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도로건설 설용흙	함수량	KSF2306	1)토취장마다 2)토질변화시 마다	
	입도	KSF2302		
	씻기	KSF2309		
	비중	KSF2308		
	역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실내CBR	KSF2320		필요시
	다짐	KSF2312	필요시마다	
	토질조사(보링)			
	동상방 지층및 보조기 층용재 료	함수량	KSF2306	1)골재원마다 2)재질변화시 마다
체가름		KSF2302		
씻기		KSF2309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다짐		KSF2312		
모래당량		KSF2340		사실도
비중 및 흡수율		KSF2503		굵은골재
비중		KSF2308		흙
실내CBR		KSF2320		
역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마모		KSF2508		
시멘트 안정처 리기층 용재료		함수량	KSF2306	1)골재원마다 2)재질변화시 마다
	체가름	KSF2502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잔골재
		KSF2503		굵은골재
	안정성	KSF2507		
	마모	KSF2508		
	연석량	KSF2516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혼합골 재	검토덩어리함유량	KSF2512		
	200번체 통과량	KSF2511		
	역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배합설계	KSF2329	1)재료가 다 른 배합마다 2)필요시	혼합물
	함수량	KSF2306	1)골재원마다 2)재질변화시 마다	
	체가름	KSF2502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비중	KSF2308		
	비중 및 흡수율	KSF2503		굵은골재
흙, 흙 용수 로, 배 수로용 일반성 토 및 표토	역성한계			
	소성한계			
	안정성			
	마모	KSF2508		
	다짐	KSF2312		
	실내CBR	KSF2320		
	함수량	KSF2306	토취장마다	
	입도	KSF2302		
	비중	KSF2308		
	역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다짐	KSF2312			
투수	KSF2322			
직접전단	KSF2343			
3축압축	KSF2346			

(2) 콘크리트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골재	체가름	KSF2502	생산지마다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잔골재
		KSF2503		굵은골재
	단위중량	KSF2505		
	모래의 유기불순물	KSF2510		
	안정성	KSF2507		
	마모	KSF2508		
	염화물함유량	KSF2515		바다모래 인경우
	물	수질검사		
콘크리트 용 화학혼 화제		당해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560	제조회사마다 동결융해 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콘크리트 용 화합물 화제	적외선흡수스펙트럼	KSM002	4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콘크리 트주입 준비	입도, 흐름, 정착성, 가사시간, 고착건조시 간, 회복률, 내열성	시방서 또는 공 인규격	제조회사마다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 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품 질시험포 함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 계량장치점검		1)공사개시전 1회 2)필요시마다	
	믹서 성능시험	KSF2455		
철근및 강재 (아연 도철선 포함)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 된 시험종목	당해 제 품의 KS	제조회사마다	
	PC강선 및 PC 강연선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D7002	제조회사 마다
PC 봉 강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 된 시험종목	KSD350	5	제조회사 마다
	콘크리 트양생 제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 된 시험종목	KSF2540	제조회사 마다

(3) 아스팔트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골재	체가름	KSF2502	1)공사개시 전 1회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2)생산지가 바뀔때마다	잔골재
		KSF2503		굵은 골 재
	마모	KSF2508		
	안정성	KSF2507		
	피막박리	KSF2355		
채움재 (석회 석분)	입도	KSF3501	제조회사 마다	기타석분 은 별도
	수분	KSF3501		시험방법 적용
	비중	KSL5110		
아스팔 트콘크 리트	배합설계	표준시방 서	재료가 다른 각배합 마다	아스팔트 품질시험 포함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 계량장치점검, 믹서 성능 시험		1)공사개시 전 1회 2)필요시 마다	

(4)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석계	비중 및 흡수율	KSF2518	1)석산마다	절밀함암 분류시험 성파시험 병행
	압축강도, 탄성파	KSF2519	2)필요시 마다	
토목 섬유 (연약 지반용 MAT)	무게측정	KSF2123	1)제조회사 마다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2)Q마크 제 품은 생략	
특수	봉합강도	KSK0530		
	투수	KSF2322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혼용물	KSK0210		감별방법	
	재질	"			
토목	무게측정	KSF2123	1) 제조회사마다	2) Q마크 제품은 생략	
섬유 (Drain Board)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2) Q마크 제품은 생략		
토목	특수	KSF2322			
	내약품성	KSM3506			
토목	무게측정	KSF2123	1) 제조회사마다		2) Q마크 제품은 생략
섬유 (토목 용부직포)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2) Q마크 제품은 생략		
	분합강도	KSK0530			
	특수	KSF2322			
	혼용물	KSK0210			
	두께측정	KSF2122			
터널용	재질	기기분석	제조회사마다		
방수위 트	인장성능, 인열성능, 가열신축성상, 신장시 열화성상, 접합인장성능	KSF4911			
	두께측정	KSF2122			

나. 관리시험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노체	다짐	KSF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함수량	KSF2306	포설후 다짐 전 2,000세제곱미터 이상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F2311	1) 2,000세제곱미터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2) 층별 450미터마다(층 다짐시) : 2차선 기준	현장밀도 시험불가능시
	평판재하	KSF2310		
노상	다짐	KSF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함수량	KSF2306	포설후 다짐 전 1,000세제곱미터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F2311	1) 1,000세제곱미터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2) 층별 400미터마다 : 2차선 기준	현장밀도 시험불가능시	
	평판재하	KSF2310			
동상방	프루프롤링	5톤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5.6kg/cm ² 이상) 통과	1) 노상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시마다	
	역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살내CBR	KSF2320			
	다짐	KSF2312	재질변화시마다		
	체가름	KSF2502	1,000세제곱미터마다 1회 이상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두께	KSF2311	1일 1회 이상		
	함수량	KSF2306	1) 포설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2) 필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F2311	1) 500세제곱미터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평판재하		KSF2310	2)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 기준	현장밀도 시험불가능시	
	프루프롤링	5톤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5.6kg/cm ² 이상) 통과	1) 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멘트	다짐	KSF2312	재질변화시마다	필요시마다	
	안정치				
	리기층	시멘트함유량	KSF2327		
	압축강도	KSF2328	1일 1회 이상		
압도조	함수량	KSF2306	1)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2)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 기준	필요시마다	
	역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살내DBR	KSF2320			
	다짐	KSF2312	재질변화시마다		
	체가름	KSF2302	1,000세제곱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터마다 1회 이상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200번체 통과량	KSF2511			
함수량		KSF2306	1) 포설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2) 필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F2311	1)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평판재하		KSF2310	2)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 기준	현장밀도 시험불가능시	
	프루프롤링	5t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5.6kg/cm ² 이상) 통과	1) 가충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뒤메우	다짐	KSF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시험불가능시	
	기 및 구조물				
	뒷채움	평판재하	KSF2310		
	함수량	KSF2306	1) 포설후 다짐 전 100세제곱미터마다 1회 이상 2) 필요시마다		
하천제	다짐	KSF2312	재질의 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방성도				
현장밀도	현장밀도 측정 또는 포화도 측정(점질도)		측제는 2,000세제곱미터마다 1회. 다만, 토량이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사는 3회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사는 1회 이상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함수량	KSF2306	강우후 또는 함수비 변화시마다		
함수량		KSF2306	강우후 또는 함수비 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다짐	KSF2312	재질변화시마다		
흙탕, 용수, 배수로, 배수로, 용일, 반성도 및 표토	현장밀도	KSF2311	1) 토량 10,000세제곱미터마다 2) 배수마다 3) 용, 배수로의 간선은 연장 200미터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마다	
	투 수	KSF2322	필요시마다	
중점 시험종목	합수량	KSF2306	도량 300세제곱미터마다	급속합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다짐	KSF2312	토질 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F2311	1)도량3000세제곱미터마다 2)매층마다	
	투 수	KSF2322	필요시마다	

(2) 콘크리트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L5201	제조일부터 3월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0톤마다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560	1)희석반입시마다	동결융해 시험 및 길이 변화 시험은 필요시	
	적외선흡수 스펙트럼	KSM0024	2)3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골재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1)최대 치수 별 1000세제곱	잔골재 적은 골재	
		KSF2503	200번체 통과량		
	모래의 유기물순물	KSF2511	2)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마모	KSF2510	미터마다		
	안정성	연화물 함유량	KSF2508	2)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KSF2507	바다모래 50톤마다	
계가름	표면수량	KSF2502	산지별, 최대 치수별 1일 1회이상		
		KSF2509, KSF2467	1일1회이상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포함)	현장배합수정		아침 작업개시전		
	슬럼프	KSF2402	1)배합이 다름 때마다 2)1일 1회이상		
	공기량	KSF2421	AE제 사용시 1일 1회이상		
	온도		필요시마다	도로포장, 댐의 경우	
	셋기분석	KSF2411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정될 때마다	
경화된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휨 강도	KSF2405, KSF2408	1)배합이 다름 때마다 2)콘크리트 타설량이 0~100세제곱미터 : 50세제곱미터마다 100~500세제곱미터 : 100세제곱미터마다 500~1000세제곱미터 : 150세제곱미터마다 1000~2000세제곱미터 : 200세제곱미터마다 2000세제곱미터 이상 : 500세제곱미터마다	•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인 경우 150세제곱미터마다
	콘크리트 양생제	KSF2540	1)반입시마다 2)3개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콘크리트 주입줄눈재	침입도, 흐름, 집착시험, 가사시간, 고착건조시간, 회복율	시방서 또는 공인규격	반입시마다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 여부	아침 작업개시전	
철근강재 (아연도철선 포함)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1)100톤마다 2)용접이음부는 500개소마다	
	PC 강선 및 연선	KSD7002	KS규정에 따라	
	PC 봉	KSD3505	KS규정에 따라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강	시험종목		라	
그라우팅	콘크리트시	KSF2432	1)작업개시전 1회 2)필요시마다	
	블리딩	KSF2414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F2433		
	압축강도	KSF2426		
시멘트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KS규정에 따라	
콘크리트포장	평탄성		차선마다	전구간

(3) 아스팔트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도로포장 상용 아스팔트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M2301	1)2000톤마다 2)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우려될 때	
컷백 아스팔트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M2302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KSM2303		
유화아스팔트		KSM2306	2000톤마다	
포장타르	입도, 수분	KSF3501	반입시마다	
채움재 (석회, 석분)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아침 작업개시전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가열시
		골재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가열 후
		골성의 합성입도	KSF2502	1일1회이상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 온도	아스팔트함유량	KSF2354	1일1회이상
		골재입도	KSF2502	
		마찰안정도	KSF2337	필요시마다
		피막박리	KSF2355	
혼합물의 포설	평탄성	밀도	KSF2355	1)1회이상
		두께	KSF2367	2)20포설 1층 당 30아르마다
		7.6m 측정기	-	차선마다 전구간
	3.0m 측정기	-	포설 후 10아르 당 1개소 이상 사용불가능시	
침투식 마카담 포장	아스팔트함유량	KSF2352	포설 후 10아르 당 1개소 이상	
			두께	

(4)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석재	비중 및 흡수율	KSF2518	1) 재질의 변화 시마다	정밀한 암분류시 탄성파시 험병행
	압축강도 탄성파속도	KSF2519	2) 필요시마다	
보도용 콘크리트판	휨강도, 흡수율 치수(유색, 두께)	KSF4001	2000매마다	
콘크리트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치수	KSF4006	1000매마다	
흡관 (원심내압강도(압력관)력철치수 근콘크리트판)	외압강도 내압강도(압력관) 치수	KSF4403	200개마다 (내압강도는 50개마다)	
하수도용 콘크리트관	외압강도 내압강도 치수	KSF4403	200개마다 (내압강도는 50개마다)	
PC콘	인장 및 압축	시방서 또는 공 인규격	각 교량마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트발뚝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4301	KS규정에 따라	
원심력 PC말뚝	휨강도	KSF4303		
강관발 목	인장	KSF4602		KSD 3566참고
교량용 고무 (교좌 장치)	경도, 인장강도, 노화, 압축영구줄음 (교좌 장치)	시방서 또는 공 인규격	각 교량마다	
인장 이음 치 준, 저항성, 회복율	인장강도, 신장율, 경도, 압축영구줄음, 노화, 오 치	시방서 또는 공 인규격	각 교량마다	
연질 화비 지수판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 된 시험종목	KSM3805	반입시마다	
도로표 지용도 용착식 도로표 지용도 표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 된 시험종목	KSM5322 KSM5333	필요시마다	
가열형 도로표 지용도 표		KSM5336		
효안용 블럭	압축강도	KSF2405	5000매마다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콘크리트)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럭	휨강도, 흡수율	KSF4419	·10,000개 미만 : 5개 ·10,000 ~ 100,000 : 10개 ·100,000개 초과 ·과시마다 : 5개 추가	
이중벽 합성 수지관	강성	KSM3500	KS규정에 따라	
토목 섬유 (연 약반용 Mat)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1) 20,000제곱미터마다	
	봉합강도	KSK0530	2) Q마크 제품은 생략. 다만, 재질변화가 의심될시는 20,000제곱미터마다	
	투수	KSF2322		
	무게측정	KSF2123		
토목 섬유 (Drain Board)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투수	KSF2322		
	무게측정	KSF2123		
토목 섬유 (토 목용 부직 포)	무게측정	KSF2122	1) 맹암거용 : 20,000미터마다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터널용 : 7,000미터마다	
	투수	KSF2322	2) Q마크 제품은 생략. 다만, 재질변화가 의심될시는 맹암거용은 20,000제곱미터마다 터널용 7,000제곱미터마다	
터널용 방수 슈트	무게측정	KSF2122	1) 7,000제곱미터마다	
	인장성능, 인열성능, 가열신축성상, 신장시열화성상, 집합인장성능	KSF4911	2) 재질변화시마다	

2. 건축

가. 선정시험

건설공사에 KS표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설계 및 시방에 그

품질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선정시험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토목공사 선정시험 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할 수 있다.
나. 관리시험

(1) 콘크리트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L5201	제조일 부터 3월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0톤마다	
유동화 제	압축강도, 슬럼프	KSF4009	1) 재조리시별 반입시마다 2)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때마다	
콘크리트 용 화학 화제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적의선 흡수스펙트럼	KSF2560 KSM0024	1) 회사별 반입시마다 2) 3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동결융해 시험 및 이화 시험 제외
골재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1) 최대치수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잔골재 굵은골재
		KSF2503	2)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200번체통과량	KSF2511		
	모래의 유기물순물	KSF2510		
	마모	KSF2508		
	안정성	KSF2507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염화물함유량	KSF2515	바다모래 50톤마다	
	체가름	KSF2502	산지별, 최대치수별 1일회 이상	
	표면수량	KSF2509 KSF2467	1일 1회 이상	
굳지 않 은 콘 크리트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포함)	현장배합수정		아절작업개시 전	
	슬럼프	KSF2402	1) 배합이 다를 때마다 2) 1일 1회 이상	
	공기량	KSF2421	AE제 사용시 1일 1회 이상	
	씻기분석	KSF2411	재질의 변화가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경화된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활강도	KSF2405 KSF2408	1) 배합이 다를 때 2) 콘크리트 타설량이 0~100세제곱미터 : 50세제곱미터마다 100~500세제곱미터 : 100세제곱미터마다 500~1000세제곱미터 : 150세제곱미터마다 1000~2000세제곱미터 : 200세제곱미터마다 2000세제곱미터 이상 : 500세제곱미터마다 3) 석축 및 채움 배수관 기초, 집수정 및 도수로 등 주요 구조물이 아니고 1개소당 콘크리트 타설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산재하는 필요시마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인 경우 150세제곱미터마다
콘크리트 아연계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540	1) 반입시 2) 3개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타설 단수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영점 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 여부	아침 작업 개시 전	
철강재 (아연도철선 포함)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1) 100톤마다 2) 용접이음부는 500개소마다	

(2) 벽돌, 블록 및 타일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시멘트 벽돌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4004	10,000매마다	
속반시멘트 블록		KSF4002	한무더기당	
점토벽돌		KSL4201	한무더기당	
규회벽돌		KSL4204		
타일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L1001	10,000장마다 1상차	
	접착력시험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0.1.4검사	600제곱미터당 1매	3층 이상 또는 외장타일을 600제곱미터 이상 시공한 경우 · 집작재료에 따라 소요 양생기간 후시험

(3) 방수제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압축강도, 흡수비, 투수시험	KSF2451	1) 제조회사별 2)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아스팔트 트래핑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4901 KSF4902	제조회사별	

(4)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석재	비중 및 흡수율	KSF2518	1) 재질의 변화시마다	
	압축강도	KSF2519	2) 필요시마다	
보도용 콘크리트 판	활강도, 흡수율 치수(유색, 두께)	KSF4001	2000매마다	
콘크리트 경재 블록 (보차도용)	활강도 흡수율 치수	KSF4006	1000매마다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4301	KS규격에 따라	
프리텐	활강도	KSF4303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선방식 원심력 PC말뚝				
강관말뚝	인장	KSF4602		KSD3566 참고
단열재	당해 제품의 KS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및 관련법규	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단열부재 포함
방화구조	당해 제품의 KS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256 관련법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경우 1회 이상	
방화문	당해 제품의 KS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268 관련법규	500개마다	

* 건축공사에 부대되는 토목공사의 품질시험은 토목부분 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3]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제17조 제2항 관련)

공사업종류	규모	시험장비	시험실규모	시험요원의 자격	비고
토목특수공사 및 전문공사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별표1 및 시방서에 따라 당해 공사업역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증 1인 이상	시험실은 필요시 설치
	10억원 ~ 30억원		40제곱미터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증 1인 이상	
	30억원 ~ 100억원		80제곱미터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인 이상	
	100억원 이상		120제곱미터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별표1 및 시방서에 따라 당해 공사업역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축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증 1인 이상	시험실은 필요시 설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건축기사	

2. 점검사항

구분	확인내용	조치의견	비고
1.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2. 품질시험의 적기 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3.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여부			
4. 중앙건설기술 설계심의 위원회 품질시험유의 사항지적에 대한 조치 여부			
5.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별표 7]

건설자재의 품질시험종류 및 방법(제24조 관련)

건설자재명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에 규정된 항목	KSF4009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KSF4009에 명시된 각종시험의 빈도에 따른다.	각종시험결과를 기록하고 주문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KSF 2349에 규정된 항목	KSF2349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KSF2349에 명시된 각종시험의 빈도에 따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천연골재(잔골재)와 바다모래의 경우는 염분농도가 0.04퍼센트 이하인 것과 0.04퍼센트를 초과한 것은 나누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바다모래	염분농도	· 자동염분측정기에 의한 염분시험 - 염분농도는 0.04퍼센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용용도를 확인한 후 주문농도 이하로 할 수 있다. - 염분농도측	· 1일 3회이상 · 자동염분측정기의 보정은 월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자동염분측정기 제작자의 사용설명서에 보정시기가 월 1회미만으로 명시된 경우는 실시내용에 따른다.	

건설자재명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정은 상부·중부·하부등을 고르게 측정하고 어느부위에 서도 기준농도 이하여야 한다.		
수압철근	KSD 3504에 규정된 항목	· KSD3504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 KSD3504에 명시된 각종시험의 빈도에 따른다.	
수압H형강	KSD 3502 및 KSD 3503 중 H형강 및 KSD 3503 중 H형강에 관하여	· KSD3502 및 KSD3503 중 H형강에 관하여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 KSD3502 및 KSD3503 중 H형강에 관하여 명시된 각종시험의 빈도에 따른다.	

[별표 8]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기준(제36조 관련)

구분	장비명	기준
종합및건축감리회사	○자동염분측정기	· 측정범위 : 0.001~1.0%이상 · 측정온도 : 0~40℃ · 전원 : 전지 및 AC100V겸용
	○콘크리트테스트램프	· 측정범위 : 100~600kg/cm ² · 측정 : 기록식
	○철근탐지기	· 파복두께 : 100mm이상, 철근간격측정
	○도막두께 측정기	· 측정범위 : 전자식 · 측정대상물 : 금속 및 비저성금속피막, 콘크리트피막
	○소음측정기	· 측정범위 : 40~110dB
	○목재습수율측정기	· 측정범위 : 6~30% · 정밀도 : ±0.5%
	○타일인발시험기	· 유압용량 : 1,500kg, 측정(Digital 표시) · 인발강도 : 90kg/cm ²
도목감리회사	○종합 및 건축감리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 목재습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별표 9]

건설공사감독자 업무 (제43조 관련)

- 감독자는 다음서류 및 도표를 작성·비치할 것
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시험대장
나.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사감독일지
다. 별지 제35호서식의 명령부

-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시부
- 별지 제37호서식의 발생품정리부
-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급자재수불부
-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시험계획서
-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시험실적보고서
- 별지 제41호서식의 공정보고서 및 공정표
- 별지 제42호서식의 반입자재검사부
- 날씨, 온도, 조위 및 수위표등
- 품질시험관리도
- 매물부분 및 구조물 검측대장
- 시공자의 안전관리 제반실적(교육계획등), 안전관리비사용실적 관계서류
- 공사측량 성과
-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 감독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적합하여 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감독할 것
가.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1)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 기타 일반이 보기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부표의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할 것
(2)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등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할 것
나. 시공확인
(1) 시공자의 시공측량결과 설계도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게 할 것
(2)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시험계획서 및 도급내역서등에 의하여 자재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3)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것
(4)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할 것
(5)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

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할 것

다. 자재관리

-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밖으로 반출하게 할 것
- (2)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할 것

라.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1) 시공자로부터 현장안전 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2) 공사로 인하여 대기·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마. 설계변경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게 설계변경할 것. 다만, 구조물의 구조나 공업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의 경우에는 구두로 이를 지시하고, 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할 수 있다.

바.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 (1) 상급자로부터 시공에 관하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부에 이를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할 것
- (2) 시공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시부에 기록하여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사. 공사현장 정리

준공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임시도로와 토취장 및 하상원상복구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할 것. 다만 현장 임시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건사의 완료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 3. 감독자는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가. 세부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4. 감독자는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계 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외에는 법 제24조, 법 제24조의 2, 영 제40조 내지 영 제45조, 영 제 47조의 3, 영 제47조의 4 및 제 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시험결과를 기록·비치할 것

- 5. 감독자는 현장관리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할 것

- 6. 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가. 천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때

나.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않은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라.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때

- 7.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가. 공사착수보고서

나. 공사시공측량 결과서

다.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라. 관급자재 입체 또는 대체사용신청서

마. 준공기한연기신청서

바. 준공검사원

사. 현장실정 보고서

아.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자.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

차.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및 신청서

- 8.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추진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가. 공정

나. 관급자재 수불상황

다. 시험진도

라.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 9.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할 것

가.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에 대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3)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기간내 지불한 지의 여부

(4)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시공분의 대금을 기간내 지불한 지의 여부

(5)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장애요인 발생으로 7일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 10. 감독자는 잉여관급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등을 조사하여 발생품정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3호서식의 발생품잉여자재보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게 할 것

- 11. 감독자 교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제출할 것

- 1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등의 경력에 대하여 별지제2호 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종등록이 확인된 때 또는 공정관리능력과 업무수행능력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들을 교체하도록 명할 것. 다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13.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는 감독자는 그 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기일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

- 14. 감독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제1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